

본협회, 「공정거래제도의 운용방향」에 대한 조찬간담회 개최

- 공정거래법 강화와 카르텔 일괄정리를 위한 입법추진 중 -

본 협회는 지난 11월 17일(화)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의클럽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휘갑 사무처장을 초청, 본 협회 회원 및 비회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제도의 운용방향」에 대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조휘갑 사무처장은 현 경제위기는 규제와 보호주의의 경제정책을 추진한 결과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따른 효율성 저하와, 정부·기업·금융 등 각 부문에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되어 대외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결여 등으로 대외신인도가 하락한 데 기인하였음을 지적하고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부합되고 국제적 기준에 걸맞는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예측가능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선단식 경영과 무분별한 사업다각화의 핵심수단인 채무보증 및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지주회사 설립의 제한적 허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결합심사제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한계기업에 대한 부당지원을 차단하여 기업집단 소속 계열기업과 독립기업간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우량기업 핵심역량의 분산을 방지함으로써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96년 12월 법률을 개정하여 부당지원행위 규제대상에 상품과 용역외에 자금·자산·인력지원행위를 추가하고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부당지원행위심사지침」을 제정·공표('97년 7월)한 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내부거래규모가 큰 5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범위반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6~30대 기업집단 중 계열회사간 자금 또는 자산 거래규모가 큰 5개 기업집단(동부, 동양, 한술, 한진, 한화) 소속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며 11월 말경에는 거의 마무리가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부당지원행위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채무보증조기해소 추진은 금년 4월 1일부터 신규 채무보증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은 2000년 3월말까지 완전 해소토록 하였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복·과다보증을 해소토록 유도함으로써 약 10조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하였다. 앞으로도 채무보증이 조기에 완

전해소되도록 금융관행의 개선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채무보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전면 금지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설립은 허용하되,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용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언급했다.

우리 경제는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을 추진한 결과 시장구조가 많은 부분에서 독과점화 되어 있는데 26개 「우선개선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제도·행태의 개선을 추진하여 '97년에는 자동차, 타이어 품목에 대해 조사하여 시정조치하였고, '98년에는 철강류 5개 품목, 정당, 커피, 내의류, 합성세제 등의 품목에 대해 경쟁촉진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제품의 단체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체 간 경쟁을 배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 노력을 감소시키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물량배정에서 제외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불만 등 다수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생산시설이 없는 부적격업체에 물량을 배정하거나 조합의 임원이 경영하는 업체 등에 편중배정되거나 비조합원의 신규가입을 제한하고 신규가입자에 대하여 물량배정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단체수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99년~2001년 기간 중 매년 단체수계약 구매대상품목을 20%씩 감축하는 내용을 「카르텔 일괄정리법안」에 반영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사업자는 민간부문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중 범위반 사례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4개 업체에 대해 1차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98. 5. 11 ~ 6. 27), 나머지 10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도 '98. 9. 16일부터 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범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시정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하도급 직권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만큼 하도급업체에게도 현금을 지급토록 의무화하고, 원사업자의 부도시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의무화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보호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중이며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사업자의 표시·광고에 반영토록 하는 “중요정보공개제”를 실시하고 광고주가 사실을 주장하는 광고내용에 대해 실증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광고실증제”와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를 신속히 방지토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하였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시장경제의 발전을 선도하고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걸맞도록 공정거래제도의 개선과 보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법개정권고(안)를 건의한 바 있으며, 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업종 구분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고 금융·보험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고, 부당지원행위에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가 금융거래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의원입법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과거 특정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가격·생산량 등에 대한 카르텔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제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카르텔 제도의 정비가 시급해짐에 따라 개별법령을 근거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가격담합, 입찰담합, 생산량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성 카르텔은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하여 폐지 또는 개선토록 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